

의안번호	2203204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4.
추 계 번호	24F319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의료·보훈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—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의료·보훈 분야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2,566억원, 2029년 2,177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조 1,808억원(연평균 2,36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6,255억원(연평균 1,2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57.5억원(연평균 11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2,206억원(연평균 441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7억원(연평균 1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,247.6억원(연평균 249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96억원(연평균 1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,598억원(연평균 32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48.5억원(연평균 9.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22.6억원(연평균 4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6.3억원(연평균 1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201.5억원(연평균 40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2억원(연평균 2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50억원(연평균 1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7조제1항)	-1,377	-1,311	-1,248	-1,188	-1,131	-6,255	-1,251
한센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7조의2)	-11.5	-11.5	-11.5	-11.5	-11.5	-57.5	-11.5
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9조)	-418.5	-427.8	-439.3	-452.7	-467.8	-2,206.0	-441.2
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)	-1.4	-1.4	-1.4	-1.4	-1.4	-7.0	-1.4
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의2)	-320.9	-280.4	-245.0	-214.1	-187.1	-1,247.6	-249.5
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22조의4)	-19.1	-19.1	-19.2	-19.3	-19.4	-96.0	-19.2
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차의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29조제4항)	-348	-333	-319	-305	-292	-1,598	-320
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0조제2항)	-9.7	-9.7	-9.7	-9.7	-9.7	-48.5	-9.7
서민주택 취득에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3조제2항)	-5.8	-5.1	-4.5	-3.9	-3.4	-22.6	-4.5
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목적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6조)	-1.13	-1.19	-1.25	-1.32	-1.41	-6.3	-1.3
국립대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37조 제1항)	-40.3	-40.3	-40.3	-40.3	-40.3	-201.5	-40.3
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38조의2)	-2.4	-2.4	-2.4	-2.4	-2.4	-12	-2.4
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0조 제1항)	-10	-10	-10	-10	-10	-50	-10
계	-2,566	-2,453	-2,352	-2,260	-2,177	-11,808	-2,362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제1항 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(한센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한센인 정착농원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3	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어린이집·유치원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4	안 제22조 제8항 (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5	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(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6	안 제22조의4 (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 사회적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감면율: (취득세) 50%, (재산세) 25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7	안 제29조 제4항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가유공자등 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8	안 제30조 제2항 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9	안 제33조 제2항 (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)	○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*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※ 전용면적 40㎡ 이하,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 - 감면율: (취득세) 10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10	안 제36조 (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)	○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*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※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- 감면율: (취득세) 100%, (재산세) 100%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11	안 제37조 제1항 (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)	○ 국립대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12	안 제38조의2 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	○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13	안 제40조 제1항 (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)	○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7조제1항 (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2	안 제17조의2제1항및제2항 (한센인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3	안 제19조제1항 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4	안 제22조제8항 (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5	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(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6	안 제22조의4 (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)	○	
7	안 제29조 제4항 (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)	○	
8	안 제30조 제2항 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	
9	안 제33조제2항 (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)	○	
10	안 제36조 (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11	안 제37조 제1항 (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)	○	
12	안 제38조의2 (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)	○	
13	안 제40조제1항 (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17조제1항)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감면액이 2018~2022년 조문별·세목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을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최근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(제17조)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
 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5.2%
 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5%
- (안 제17조의2)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최근 3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 11.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- (안 제19조) 향후 어린이집·유치원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향후 어린이집·유치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취득세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20.3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
 - 향후 어린이집·유치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재산세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4.3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(안 제22조)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
 -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최근 2년(2021~2022년)간 연평균액(0.5억원)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1년부터 취득세 감면율을 50%에서 30%로 인하

- 향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1년 취득분은 향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 제한 조건 없음
- (안 제22조의2) 향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12.6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
- (안 제22조의4)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을 반영하여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(재산세)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- (안 제29조제4항) 2018~2022년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취득·사용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실적 감소율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 감소율: -4.1%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 감소율: -4.4%
- (안 제30조제2항) 2018~2022년 보훈병원의 부동산 취득·사용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, 최근 5년(2018~2022년)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-3.5억원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-6.2억원
- (안 제33조제2항)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(건당 감면액)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 건당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- (감면건수)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상 2022년 감면건수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상 면적별 주택거래건수의 최근 3년(2022~2024년(추정)) 연평균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2024년 주택거래건수는 2024년 6월까지의 6개월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12개월 거래실적을 산출하여 적용
- (안제36조)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(취득세)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제출한 향후 취득계획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추계
 - (재산세)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37조제1항) 2018~2022년 국립대병원 등의 부동산 취득·사용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, 최근 5년(2018~2022년)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-18.1억원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-22.2억원
- (안 제38조의2) 2018~2022년 지방의료원의 부동산 취득·사용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실적을 살펴보면, 2020년 이후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, 최근 3년(2020~2022년)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최근 3년('20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-0.3억원
 - 최근 3년('20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2.1억원
 - 2021~2022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으나 동 기간 신규 지방의료원 취득이 발생하였으며,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재산세 감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최근

3년('20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

- (안 제40조제1항) 2018~2022년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의 부동산 취득·사용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불규칙하므로, 최근 5년(2018~2022년) 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-7.5억원
 - 최근 5년('18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-2.5억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7조 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·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

- 대상자: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의 경우 1~4급) 판정을 받은 자
- 대상 차량
 - 승용자동차: 배기량 2000cc 또는 승차정원 7~10명 이하 승용자동차
 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 - 화물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/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□ (감면실적)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실적은 2018년 1,944억원에서 2022년 1,59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

- 취득세 감면은 2018~2022년 동안 연평균 5.2% 감소
- 자동차세 감면은 2018~2022년 동안 연평균 4.5% 감소

[표 2]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	2018	2019	2020	2021	2022	'18~'22 연평균 증감률
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실적	취득세	880	788	818	750	710	-5.2
	자동차세	1,064	1,028	993	943	887	-4.5
	계	1,944	1,816	1,811	1,693	1,596	-4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감면액 전망) 2022년 감면 실적을 바탕으로 취득세는 향후 연평균 5.2% 감소하며, 자동차세는 향후 연평균 4.5%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2027년까지 감면액 전망

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5.2%
- '18~'22년 장애인용 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액 연평균 증감률: -4.5%

[표 3]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액 전망: 2022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취득세	672	637	604	572	542	515	488
자동차세	847	809	773	739	706	673	64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2025년 1,377억원, 2029년 1,131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6,255억원(연평균 1,2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취득세: 2025~2029년간 총 2,721억원(연평균 544억원) 감소
 - 자동차세: 2025~2029년간 총 3,534억원(연평균 707억원) 감소

[표 4]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 및 자동차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(안 제17조 제1항)	-1,377	-1,311	-1,248	-1,188	-1,131	-6,255	-1,251
- 취득세	-604	-572	-542	-515	-488	-2,721	-544
- 자동차세	-773	-739	-706	-673	-643	-3,534	-707

나. 한센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7조의2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한센인의 치료·재활·자활 등을 위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원자원시설세를 면제
- (감면실적)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11억

원에서 2022년 11억원으로 유지되는 모습

[표 5]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: 2020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
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감면액	11.4	11.4	11.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최근 3년(2020~2022년) 연평균 감면액 11.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(3) 추계결과

-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 11.5억원, 2029년 11.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7.5억원(연평균 11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(안 제17조의2)	-11.5	-11.5	-11.5	-11.5	-11.5	-57.5	-11.5

다. 어린이집·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지방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9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
 - 다만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

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% 감면

-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다음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
 -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 -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
 -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
 -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등

□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109.9억원에서 2022년 69.7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감소율 20.3%)에 있음
-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10.4억원에서 2022년 337.7억원으로 증가추세(연평균 증가율 4.3%)에 있음

[표 7] 최근 3년간 어린이집·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감율
취득세 감면액	109.9	95.0	69.7	-20.3
재산세 감면액	310.4	324.4	337.7	4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어린이집·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418.5억원, 2029년 467.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 2,206억원(연평균 441.2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취득세 감면실적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20.3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(4.3%)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8] 어린이집·유치원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
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-35.3	-28.1	-22.4	-17.9	-142	-117.9	-23.6
재산세 감면액	-383.2	-399.7	-416.9	-434.8	-453.5	-2,088.2	-417.6
합계	-418.5	-427.8	-439.3	-452.7	-467.8	-2,206.0	-441.2

라.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-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0%(감염병전문병원 40%)을 경감
 -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%(감염병전문병원 60%)을 경감
-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2.1억원에서 2022년 0.2억원을 나타내고 있음

- 2021년부터 취득세 감면율이 50%에서 30%로 인하
-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9.2억원에서 2022년 0.9억원을 나타내고 있음
- 2021년 취득분은 향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 제한 조건 없음

[표 9]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
취득세 감면액	2.1	0.9	0.2
재산세 감면액	9.2	0.4	0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-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25년 1.4억원, 2029년 1.4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 7.0억원(연평균 1.4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년(2021~2022년)간 취득세 감면실적의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1년 취득세 감면율 인하(50% → 30%) 감안
-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022년 재산세 감면액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재산세 감면대상 조정(2021년 취득분은 5년간 감면, 2022년 이후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) 감안

[표 10]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-0.5	-0.5	-0.5	-0.5	-0.5	-2.5	-0.5
재산세 감면액	-0.9	-0.9	-0.9	-0.9	-0.9	-4.5	-0.9
합계	-1.4	-1.4	-1.4	-1.4	-1.4	-7.0	-1.4

마.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제22조의2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

-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
 -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,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,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 - 다만,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
-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
 -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
 -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
 -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

□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629.5 억원에서 2022년 480.7억원으로 감소추세(연평균 감소율 12.6%)에 있음

[표 11] 최근 5년간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연평균 증감율
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	629.5	597.3	480.7	-12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결과

□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320.9억원, 2029년 187.1억원 등 2025

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,247.6억원(연평균 249.5억원)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최근 3년(2020~2022년)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감소율(12.6%)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[표 12]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-320.9	-280.4	-245.0	-214.1	-187.1	-1,247.6	-249.5

바.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22조의4)

(1) 추계방법
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계
 - (취득세) 동 감면에 따른 최근 3년(2021~2023년)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재산세) 동 감면에 따른 최근 3년(2021~2023년) 재산세 감면실적은 증가하는 추세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연평균증가율(6.6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13]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연평균 감면액	연평균증가율
취득세	19.2	14.2	20.1	17.8	-
재산세	0.9	1.1	1.1	-	6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결과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96.0억원(연평균 1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4]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사회적기업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	소계	-19.1	-19.1	-19.2	-19.3	-19.4	-96.0	-19.2
	취득세	-17.8	-17.8	-17.8	-17.8	-17.8	-89.0	-17.8
	재산세	-1.2	-1.3	-1.4	-1.5	-1.6	-7.0	-1.4

사.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(안 제29조제4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 개요) 상이등급 1~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
○ 대상 차량

- 승용자동차: 배기량 2,000cc 또는 승차정원 7~10명 이하 승용자동차
- 승합자동차: 승차정원 15명 이하
- 화물차: 최대적재량 1톤 이하 / 이륜자동차: 배기량 250cc 이하

○ 2016년 이후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(제17조)에서 분리

□ (감면실적) 2018~2022년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·사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

- (취득세) 감면실적은 2018년 194억원, 2022년 164억원으로 2020년 일시적인 증가(199억원)를 제외하면 증가세로 판단
 - 2018~2022년 연평균 증감률: -4.1%
- (자동차세) 감면실적은 2018년 279억원, 2022년 23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
 - 2018~2022년 연평균 증감률: -4.4%

[표 15] 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취득세	194	186	199	182	164
자동차세	279	269	261	249	23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최근 5년간(2018~2022년)의 감면실적 감소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22년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실적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 감소율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16]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전망: 2023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취득세	157	151	145	139	133	127	122
자동차세	223	213	204	195	186	178	170

(3) 추계결과

-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1,598억원(연평균 320억원)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7]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

취득세·재산세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차의 취득세·자동차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29조제4항)	-348	-333	-319	-305	-292	-1,598	-320
- 취득세	-145	-139	-133	-127	-122	-666	-133
- 자동차세	-204	-195	-186	-178	-170	-932	-186

아. 보훈병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안 제30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
○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 감면율 75%로 축소되고, 2021년 이후 감면율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로 축소

○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

-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~2020년은 감면율 75%로, 2021년 이후는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로 축소
-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-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

□ (감면실적)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,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8.1억원, 재산세 감면액은 22.2억원 수준

- (취득세)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,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3.5억원 수준
 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 이후: 75% → 2021년 이후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
 - 매년 취득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

[표 18] 보훈병원의 취득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8.9	0.6	0.7	4.5	6.1
건수	3	6	12	14	10
감면율	75	75	75	50	50
조정실적 ¹⁾	6.0	0.4	0.5	4.5	6.1

주: 1) 실제실적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각 년도

- (재산세)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

추이를 살펴보면,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연평균 6.2억원 수준

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 이후 : 75% → 2021년 이후 50%
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
- (감면세목조정)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
- 매년 재산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

[표 19] 보훈병원의 재산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13.7	15.0	14.7	1.4	7.5
감면율	75	75	75	50	50
건수	28	31	30	9	18
조정실적 ¹⁾	6.9	7.6	7.4	1.4	7.5

주: 1) 실제실적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하고,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(취득세) 취득세는 최근 5년('18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한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5년간 평균 조정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조정감면실적: 3.5억원

□ (재산세) 재산세는 최근 5년('18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감면율, 감면대상 세목 등이 축소된 2021년 이후 감면건수가 감소한 추세이나, 이전의 실적을 현행의 기준으로 조정한 실적 2018~2020년 실적과 2022년 실적이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
 -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계속 발생함에도 재산세 감면액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조정감면실적: 6.2억원

(3) 추계결과

-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48.5억원(연평균 9.7억원)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20] 보훈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·재산세
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30조 제2항)	-9.7	-9.7	-9.7	-9.7	-9.7	-48.5	-9.7
- 취득세	-3.5	-3.5	-3.5	-3.5	-3.5	-17.5	-3.5
- 재산세	-6.2	-6.2	-6.2	-6.2	-6.2	-31	-6.2

자.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(안 제33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

-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
 - 서민주택이란 전용면적 40㎡ 이하,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의미

(2) 추계방법

- 건당 감면액 및 감면건수를 추정하여 향후 취득세 감소분 추계
 - (건당 감면액)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연평균 감면액(63.6만원)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21]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
		2021	2022	2023	연평균('21~'23)
취득세	건수(건)	3,310	2,000	1,342	-
	감면액(억원)	20	13	9	-
	건당 감면액(만원)	61.8	64.1	64.9	63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감면건수)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상 2023년 감면건수(1,342건)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상 면적별 주택거래건수의 최근 3년(2022~2024년(추정)) 연평균증감률(-12.2%)을 적용하여 추정

[표 22] 면적별 주택거래건수

(단위: 호, %)

거래규모	2022	2023	2024		연평균증감률 (‘22~’24)
			1~6	1~12(추정) ¹⁾	
20㎡이하	23,115	17,649	8,673	17,346	-
21~40㎡	105,842	83,227	41,022	82,044	-
계	128,957	100,876	49,695	99,390	-12.2

주: 1)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산출(6개월 거래실적×2)한 1년간의 거래 추정치
자료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23]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 추정

(단위: 건)

	2025	2026	2027	2028	2029
감면건수(추정)	908	797	700	615	50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.6억원(연평균 4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4]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서민주택 취득에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3조제2항)	-5.8	-5.1	-4.5	-3.9	-3.4	-22.6	-4.5

차.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(안 제36조)

(1) 제도 개요

-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

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

- 현행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으로 규정하는 감면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임

(2) 추계방법

□ (취득세)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제출한 향후 취득계획을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추계

-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향후 춘천 및 천안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부동산 취득계획은 다음과 같음
 - 2027~2029년은 2026년의 계획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

[표 25]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계획

구분	부동산 취득건수(건)			연간 건당 취득가액(백만원)	
	2024	2025	2026	토지	주택
춘천	10	6	6	40	174
천안	18	18	18	33	178

주: 주택건축용 부동산은 2024~2026년 3년간 취득할 예정

자료: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제출자료

- 부동산 취득계획을 바탕으로 부동산 유형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향후 취득세액 추계
 - 취득세율: (농지 외 토지) 4%, (주택) 1~3%

□ (재산세) 행정안전부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제출한 재산세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감면액에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증가율(15.1%)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26]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가율 (‘21~’23)
감면실적	0.21	0.20	0.28	15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및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□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

6.3억원(연평균 1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27]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대한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목적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36조)	계	-1.13	-1.19	-1.25	-1.32	-1.41	-6.3	-1.3
	취득세	-0.76	-0.76	-0.76	-0.76	-0.76	-3.8	-0.8
	재산세	-0.37	-0.43	-0.49	-0.56	-0.65	-2.5	-0.5

카. 국립대병원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안 제37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국립대병원 등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

-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 감면율이 75%로 축소되고 2021년 이후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로 축소
-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 축소
 -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 2017년 이후는 75%로, 2021년 이후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로 축소
 - 2021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- 동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
 -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
 -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
 -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
 - 「암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
 -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
 -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
 -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

□ (감면실적)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,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8.1억원, 재산세 감면액은 22.2억원 수준

- (취득세)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

추이를 살펴보면, 연평균 18.1억원 수준

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 이후: 75% → 2021년 이후 50%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
- 매년 취득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

[표 28] 국립대병원 등의 취득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5.6	69	45	9.5	1.5
건수	15	49	131	70	80
감면율	75	75	75	50	50
조정실적 ¹⁾	3.7	46	30	9.5	1.5

주: 1) 실제실적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
 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각 년도

- (재산세)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, 연평균 22.2억원 수준
 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 이후 : 75% → 2021년 이후 50% (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60%)
 - (감면세목조정)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
 - 매년 재산세 감면 건수 및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

[표 29] 국립대병원 등의 재산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47	54	64	5	23
감면율	75%	75%	75%	50%	50%
건수	145	152	312	55	163
조정실적 ¹⁾	24	27	32	5	23

주: 1) 실제실적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하고,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(취득세)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('18~'22년)간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-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: 18.1억원
- (재산세)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('18~'22년)간의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국립대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므로, 매년 취득건수가 증가함에도 재산세 감면액이 일정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음
 -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: 22.2억원

(3) 추계결과

- 국립대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01.5억원(연평균 40.3억원)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30]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·재산세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37조 제1항)	-40.3	-40.3	-40.3	-40.3	-40.3	-201.5	-40.3
- 취득세	-18.1	-18.1	-18.1	-18.1	-18.1	-90.5	-18.1
- 재산세	-22.2	-22.2	-22.2	-22.2	-22.2	-111	-22.2

타.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안 제38조의2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 -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 감면율 75%로 축소

- 단,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%로 감면율 상향
-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
 -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는 75%로 축소(단,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2021년 이후 85%로 감면율 상향)
 -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 -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
- (감면실적)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취득세는 2018년 3.4억원에서 2022년 0.3억원으로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며, 재산세는 2021년 이후 감면실적이 없음
- (취득세)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, 2021년에는 실적이 없음

[표 31]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취득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3.4	1.6	0.7	-	0.3
건수	14	5	10	-	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- (재산세) 감면세목 조정을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, 2018~2020년 평균 감면실적은 7.4억원이나 2021년 감면세목 조정 이후 감면실적이 없음
 - (감면세목조정)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
 - 지방의료원이 취득한 부동산이더라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취득세 감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감면액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

[표 32] 지방의료원의 의료시설 재산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10.4	10.5	8.1	—	—
감면율	75	75	75	—	—
건수	43	42	37	—	—
조정실적 ¹⁾	7.9	8.0	6.2	—	—

주: 1)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□ (취득세) 취득세는 최근 3년('20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18~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, 최근 3년('20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감면 규모 추정
- 최근 3년('20~'22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0.3억원

□ (재산세) 재산세는 최근 3년('20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2021~2022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으나 동 기간 신규 지방의료원 취득이 발생하였으며, 기존에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재산세 감면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최근 3년('20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감면 규모 추정
- 최근 3년('20~'22년)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실적: 2.1억원

(3) 추계결과

□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12억원(연평균 2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33]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·재산세 2025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38조의2)	-2.4	-2.4	-2.4	-2.4	-2.4	-12	-2.4
- 취득세	-0.3	-0.3	-0.3	-0.3	-0.3	-1.5	-0.3
- 재산세	-2.1	-2.1	-2.1	-2.1	-2.1	-10.5	-2.1

파.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(안 제40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□ (제도개요)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

- 취득세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 감면율 75%로 축소되고, 2021년 이후 감면율 50%로 축소
- 재산세 또한 감면율 및 감면 범위가 축소
 - 감면율은 2016년까지 100%로 유지되다가, 2017년 이후는 75%로, 2021년 이후는 50%로 축소
 - 2021년 이후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 - 2021년 취득분은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감면, 2022년 이후에는 제한 조건 없음
- 취득세·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자는 다음과 같음
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
 - 「결핵예방법」에 따른 대한결핵협회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7.5억원 수준이며, 재산세 조정감면실적은 연평균 2.5억원 수준

- (취득세)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, 연평균 7.5억원 수준
 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~2020년: 75% → 2021년 이후 :

[표 34]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13.1	11.0	12.7	1.4	11.4
건수	14	12	10	7	15
감면율	75	75	75	50	50
조정실적 ¹⁾	8.7	7.3	8.5	1.4	11.4

주: 1) 감면액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- (재산세) 감면규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면실적 추이를 살펴보면, 조정된 연평균 감면실적은 2.5억원 수준
 - (감면율) 2016년 이전: 100% → 2017년~2020년: 75% → 2021년 이후 : 50%
 - (감면세목조정) 2021년부터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 제외

[표 35]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실적 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,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5.2	5.7	6.1	1.1	2.8
건수	126	127	134	39	67
감면율	75	75	75	50	50
조정실적 ¹⁾	2.6	2.9	3.1	1.1	2.8

주: 1) 감면실적에 50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하고, 현행이 재산세 도시지역 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을 고려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(취득세) 취득세는 최근 5년('18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감면율 축소를 고려하여 과거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한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5년간 평균 조정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조정감면실적: 7.5억원
- (재산세) 재산세는 최근 5년('18~'22년)간 감면액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

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감면율 등이 축소된 2021년 이후 조정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1.1~3.1억원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5년간 평균 조정감면액을 기준으로 추계
 -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계속 발생함에도 재산세 감면액을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조정감면실적: 2.5억원

(3) 추계결과

-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0억원(연평균 1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36]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·재산세
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(안 제40조제1항)	-10	-10	-10	-10	-10	-50	-10
- 취득세	-7.5	-7.5	-7.5	-7.5	-7.5	-37.5	-7.5
- 재산세	-2.5	-2.5	-2.5	-2.5	-2.5	-12.5	-2.5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